



제 18-S5001 호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회사명 : 현대엘리베이터(주)

대표자 : 송 승 봉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춘대로 2091

사업자등록번호 : 126-81-04267

인증범위(KSIC) : C29162(승강기 제조업)

유효기간 : 2018. 3. 31 ~ 2021. 3. 30

위 업체는 서비스혁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므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요령 제22조에 따라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

사단법인 한국서비스진흥협회장



1. 인증일 : 2018. 03. 31

2. 변경일 : 2019. 12. 02(대표자 변경)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계약서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현대엘리베이터(주) (이하 “갑”이라 함)와 유지관리업자인 현대엘리베이터(주) 또는 현대엘리베이터(주) 공동수급체(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자유로운 의사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현대엘리베이터(주)가 “갑”과 단독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서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다 음 =

제 1 조 (계약대상 및 계약내역)

“갑”과 “을”은 계약 대상 승강기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현장명(건물명) : 필리핀대사관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태원동 5-1
3. 계약 상품명 : YFM FM-Light FRTS[FM+원격제어(HRTS)]
 기타()
4. 계약대상 승강기 및 월 유지관리료 내역

구분	기종	사양	대수	단가(원)	월 유지관리료(원)	비고
유지관리	STVF-2	PSB-150045-5	1		180,000	
원격제어	HRTS	월 사용료				
비상통화	DI-PBX					
기타						
소계			1		180,000	
부가가치세(10%)					18,000	
합계					198,000	

※ 적는 칸이 부족하면 쌍방 날안하여 별첨할 수 있습니다.

가. 원격제어 서비스 제공 및 비상통화를 위한 회선 제공 및 통신료는 다음과 같이 부담키로 한다.

- 회선형태 : 유선 무선
- 회선제공 : 관리주체 현대엘리베이터
- 통신료 : 관리주체 부담 현대엘리베이터 부담

나. “을”은 계약기간동안 원격제어 서비스 제공 및 비상통화를 위한 장비가 항상 양호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원격제어 서비스 제공 및 비상통화를 위한 장비 임대료는 월 [] 원으로 한다. 단, “갑”이 제5호 나목의 계약기간 동안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되, “갑”의 사정으로 이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기간 동안 면제한 장비임대료 및 계약기간 동안 이 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가목에 따라 “을”이 납부한 통신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이 제5호 다목에 따라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기간 단위 별로 적용한다.

라. 원격제어 서비스 제공 및 비상통화를 위한 장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을”은 이를 즉시 회수한다. 단, “갑”이 해당 장비를 “을”로부터 구매하여 “을”이 설치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 원격제어 서비스 및 비상통화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에는 적용되지 않음

5. 계약기간

가.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3월이월 ~ 2023년2월28일까지 [/>] 개월간으로 한다.

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이 제13조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최초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 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은 연장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종료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자동연장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후까지 갱신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을”은 “갑”의 명시적 거절의사 표시가 없는 한 종전과 같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체결일까지의 “을”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대해 “갑”은 “을”에게 종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때에도 같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자체점검”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월정유지관리비”라 함은 승강기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이하“유지관리업자”라 한다)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유지관리업자에게 매월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 ① “갑”의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수급체인 “을”의 공동도급의 유형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구성원 상호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구성원(1)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	
구성원(2)		

- ③ “을”의 업무분담 및 대가의 분배는 별첨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에 따르며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의 서면 동의를 있어야 한다.
- ④ “을”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갑”의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 ⑤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공동수급 협정서
 2. 별첨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 간의 업무 구분 및 도급계약 금액

제 4 조 (유지관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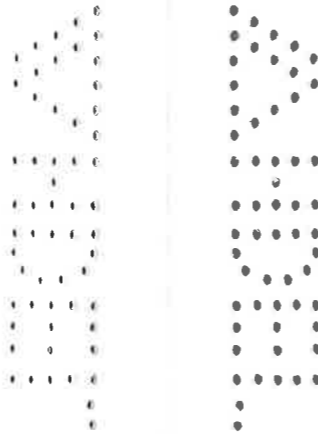
“을”은 이 계약 제1조 제4호에 기재된 계약 대상 승강기(이하 ‘계약승강기’라 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승강기의 정상적이고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첨2. “종합유지관리시방서”에 따라 자체점검과 급유, 조정 등을 [/] 개월 [/] 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 또는 기록한다.
2. 운행 중인 계약승강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긴급 고장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제1호의 유지관리업무는 “을”의 통상근무시간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정에 따라 “을”의 통상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제2호의 업무중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 및 안전과 무관한 고장에 대해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의 통상근무시간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을”은 추가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근무시간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의 오전 9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한다).
4.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검사(또는 정밀안전검사)와 관련된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관련 업무는 “을”이 대행한다.

5. 이 조에서 정한 유지관리방법과 별첨2. “종합유지관리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을”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 (부품의 무상제공 및 제외항목)

- ① “을”은 계약승강기의 자체점검,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 ② 전항의 부품교체는 “을”의 정기적인 진단결과에 의해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며 부품교체의 범위는 계약승강기의 정상적인 사용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기기의 마모, 열화 및 계약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며 “종합유지관리 시방서”의 점검의 대상 개소 관련부품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계약의 부품교체 범위에서 제외된다.
1. 계약승강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교체
 2. 의장부품(Sill, Jamb, Door, Panel, 천정 등)의 도장 또는 교체
 3. 제어반, 권상기, 전동기 등의 Set 교체
 4. 별첨 “종합유지관리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품교체 및 수리
 5. 부품교체를 위해 필요한 건축 관련 제반공사
 6.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관공서의 요구에 의한 설비의 개수 또는 신규 부속물 추가에 관한 공사
 7. “갑”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부적당한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부품교체
 8.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품교체
 9. 전자제품(하기와 같이 1set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단품
 - 가. CRT 감시반 자재
Computer, Monitor, Printer, OS 및 SW
 - 나. 행선지 예약시스템
Touch Screen, Computer, Monitor, OS 및 SW
 - 다. Information Device 관련 자재
Computer, Monitor, OS 및 SW 관련 Hard Ware
 - 라. CCTV 및 영상관련 장비
CCTV Camera, 영상저장 Hard Ware
 - 마. ELD 시스템 내 배터리
 10. 기타 사항
 - 가. 대리석 및 바닥재
천연 대리석 및 인조 대리석
 - 나. 건물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재
RFID, 조명장치 등 건물주가 직접 설치한 자재



제 6 조 (원격제어서비스의 제공방법)

“을”은 이 계약 제1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계약내역에 원격제어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계약 승강기에 대하여 별첨3. 원격제어서비스 시방서에 따라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을”은 매월 1회 원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2. “을”은 계약승강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24시간 원격으로 감시하며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 후 “갑”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3. “을”은 “갑”이 요청할 경우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강기 운행층 변경, 도어 닫힘대기시간조정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 7 조 (“갑”의 의무)

“갑”은 “을”의 원만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점검자의 출입
“갑”은 “을”이 계약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지역이란 계약승강기, 기계실, 승강로, 피트, 방제실 등의 시설물과 그 주변 및 진입구역을 의미한다.
2. 제3자의 개입
계약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갑”은 본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에 대한 유지관리업무(유지관리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일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없고, 제3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3. 운영상태에 대한 확인
“갑”은 계약승강기의 쾌적한 운영을 위해 이상운영이나 불규칙한 성능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을”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계약승강기 주변을 항상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계약승강기 이용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의 제공
“갑”은 “을”이 이 계약상의 유지관리 책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이 요청하는 적절한 공간, 전력, 용수, 환기, 조명 등을 제공한다.
5. 법정검사
법정 정기검사와 관련된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 관련업무는 “을”에게 대리권을 부여한다.
6. 변경사항의 통지
“갑”은 이 계약기간 중 계약승강기 또는 계약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이 매매, 양도되거나, 영업양도 등 “갑”의 사정으로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을”의 사전 동의 하에 계약승강기의 매수인·양수인·영업양수인 등 계약승강기의 새로운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이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매매·양도·영업양도 이후의 유지관리료 및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새로운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와 연대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7. 교체된 부품의 처리

계약기간 중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된 부품은 임의적인 가공·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을”이 회수하여 처리하며 “갑”은 이에 협조한다. 이와 달리 “갑”이 교체된 부품을 임의로 재판매·재사용함으로써 이로부터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을”은 면책된다.

제 8 조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불)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정유지관리비를 매월 20일 까지 청구하고, “갑”은 같은 달 27일 까지 “을”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단, 점검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유지관리비는 일수로 산정하여 지불한다.

제 9 조 (책임의 한계)

- ① “을”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을”의 직원이 해당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단,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을”이 유지관리업무를 중단할 경우 “을”의 유지관리업무 중단 이후 유지관리 미비로 발생한 계약승강기 사고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업무가 재개된 경우, 재개된 날로부터 “을”은 다시 이 계약상의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 (유지관리업무의 중단)

- ①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유지관리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료의 지급을 독촉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유지관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지관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 ② 연체된 유지관리료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 완납일의 다음날부터 유지관리업무를 재개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유지관리업무의 재개를 위해 기술자의 재배치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사전 통지로서 유지관리업무재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면책사항)

유지관리 및 책임의 한계는 해당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 내의 전원차단기 2차측 이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사고 또는 “갑”의 직접 및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을”은 면책된다.

1. 천재지변, 화재, 도난, 공장폐쇄, 파업, 출입통제,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2. “갑”의 건물자체의 하자,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갑”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비, 설비 등을 승강로, 기계실 등 승강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 설치한 경우
4.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임의로 시행한 전기회로의 변경, 부품의 제거, 이설교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5. “을”이 승강기 이용시 주의사항을 부착,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관리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6. “갑”이 지급할 유지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체납 2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고
7.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이 계약의 내용상 “을”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의 노후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공사를 “갑”에게 요구하였으나 “갑”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8.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부품의 일부를 교체 또는 변경하거나, “을”이 시행하지 아니한 부품 교체 또는 수리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승강기 사고
9. “갑”이 “을”과 협의 없이 계약 승강기 제조사의 순정부품 이외의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
10.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유지관리비의 조정)

“갑”은 이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 자재비, 노무비 등 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되는 금액만큼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하기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등)

- ① “갑”은 “을”의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 서면 통지로서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구성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구성원에 대해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을”의 구성원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2. 일방적으로 이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 서면통지로서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갑”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갑”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2. 일방적으로 이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승강기에 “을”의 직원 또는 “을”이 지정한 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어떤 형태의 작업이든 진행될 경우
 4. 이 계약상의 유지관리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5. “을”로부터 작업(수리공사, 부품교체 등)이 필요하다는 서면 통지를 접수한 후 그 서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을”에게 작업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지 않거나 작업수행을 거절하여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선투입 총비용 (계약 이후 “을”이 계약승강기에 대하여 지출한 원격제어 서비스 제공 및 비상통화를 위한 장비 가액, 장비 설치비, 회선 설치비, 이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된 부품가액 및 작업비용 등 장비관련비용)을 “총 계약 월 수 분의 잔여계약 월 수(잔여계약 월 수 ÷ 총 계약 월수, 해지일이 포함된 당해 월은 일할 계산)”의 비율로 정산하여 “을”로부터 정산금액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단, 최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 ‘선투입 총비용’은 갱신에 따라 추가 투입된 비용으로, ‘계약 월수’는 추가된 계약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갑”은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이미 발생한 유지관리료 및 원격제어서비스료를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원격제어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등을 임대한 경우에는 설치한 장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므로 “을”은 이를 철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운영정지에 따른 배상책임)

- ① 계약승강기가 해당 월의 첫째 날부터 말일 사이에 고장으로 운영정지한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료의 일정액을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1조 각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6시간 초과 운영정지 발생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료의 50% 면제
 2. 48시간 초과 운영정지 발생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료의 100% 면제
- ② 전항의 유지관리료 삭감은 원격제어(HRTS), 비상통화(DI-PBX) 등의 월 사용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위약금의 지불)

- ① “갑” 또는 “을” 중 당사자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 조항은 이 계약을 승계한 양수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년치 월 유지관리료 총합의 10%
 2.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월 유지관리료 총합의 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지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실제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양도금지 및 하도급 제한 등)

“을”의 각 구성원은 본 계약의 내용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양도하거나 하도급 하였을 경우 “갑”은 제1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 및 관계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갑”과 “을”간의 해석차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규 및 일반 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제 18 조 (비밀유지)

- ①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주요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경쟁사업자 등 그 어떤 제3자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법령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된 항목에 대해서는 법령이 요구한 필수적인 항목 및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만 공개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에 따라 서로 알게되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영업상의 자료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 (분쟁해결)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제1심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 22 년 0 / 월 27 일

“갑”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리4블록 80
 상 호 : 주한필리핀대사관
 사업자성명 : Maria Theresa Bringas Dizon - De Vega
 사업자등록번호 : 213-84-10180
 업 태 :
 종 목 :



“을” 명 칭 : 현대엘리베이터(주)
 구성원(1) 주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126-81-04267
 서울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194 101-85-28953
 강북지사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4길 19, 202호 402-85-36486
 강서지사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6길 84, 7층 190-85-01202
 인천지사 :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304 139-85-08286
 강남지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72, 3층 512-85-07482
 수원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D동 804호 626-85-01453
 분당지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번길 1 8층 650-85-01359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차악고교길 19, 4층 294-85-01300
 대구지사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32, 2001호 502-85-05304
 부산지사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23, 901호 885-85-01372
 울산지사 : 울산시 남구 중앙로 165-1 610-85-09014
 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608-85-07255
 대전지사 : 대전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 6층 306-85-04823
 충청지사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47, 3층 181-85-01417
 광주지사 :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66 410-85-03292
 전주지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61 418-85-03049
 제주지사 : 제주시 삼우로 83, 3층 567-85-01246



대표자성명 : 대표이사 송 승 봉
 “을” 명 칭 :
 구성원(2) 주사무소소재지 :
 대표자성명 :

- ※ 별첨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 2. 종합유지관리 시방서
- 3. 원격제어서비스 시방서

[별첨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대금지급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원계약의 발주자(관리주체)는 이를 승인한다.

- 유지관리 대가지급
 ○ 유지관리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구성원1.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구성원2.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2. 공동수급체 업무분담 및 대가분배

구분	업무내용 상세내용	역할구분		비고
		구성원1	구성원2	
고객관리	고객정보 관리	●	○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제품이력 정보 관리	●		
	계약 관리	●	○	계약정보시스템 운영
	수급 및 채권 관리	●	○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점검일정 관리 및 안내	●	○	●전산시스템운영 ○점검인원 계획 관리
	정기 자체점검		○	
	소모성 부품 제공	●	○	●부품공급 ○교체작업
	특별점검 원격점검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비 납부 정기검사 일회	● ● ● ●	 ○	출장 정밀안전점검(필요시) 종합유지관리 또는 원격서비스 별도 계약시
고장처리	고장 접수	●		
	고장 배치 및 완결 관리	●	○	HCCC 콜센터 운영 (24시간 365일)
	고장시 현장출동 및 수리		○	
	원격 고장처리	●		원격서비스 별도 계약시
	중대고장 출장 기술지원	●	○	기술지원 운영(필요시)
	고장처리 만족도 조사 고장대기 (숙직, 당직)	● ●	 ○	야간 및 휴일 고장 대기
부품교체 및 자재관리	자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		
	자재 청구		○	
	원자재구매, 생산, 부품조달	●		물류센터운영
	물류, 배송 (물류창고 운영) 부품 및 자재공급 부품교체 및 수리공사 작업	● ● ●	 ○	(모든자재는"구성원1"공급원칙) 종합유지관리별도계약시, 또는수리공사별도계약시
안전관리	수리공사 정밀안전진단	●		
	안전교육	●	○	●안전매뉴얼및사고사례전파 ○자체교육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 등록		○	
	안전보호구 구비, 착용 안전검사 안전사고 조사	 ● ●	 ○ ○	
고객 사후관리	고객불만 접수 및 상담	●		HCCC 운영(24시간 365일)
	고객불만 처리	●	○	●불만대응총괄 ○고장수리, 현장출동
	고객 만족도 조사	●		
	제품 품질 보증	●		
계약 금액 비율		47 %	53 %	(고객 부담비율)
각 구성원 별 월 유지관리료		원	원	
원격제어 (HRTS)		원	원	
비상통화 (DI-PBX)		원	원	
합 계		원	원	합계금액: 원(월) (VAT포함)

※ 기재란이 부족할 시 각 당사자(관리주체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 날인하여 별첨할 수 있음

[별첨 2]

종합유지관리 시방서

‘을’은 계약승강기가 정상 또는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1) 정기적으로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기기 및 장치의 점검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급유, 조정 및 부품교체를 실시한다.
- 2) 점검의 대상 개소 및 기기명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제 7 항 『점검의 대상 개소』와 같다.
- 3) 매 점검시 마다 『작업 보고서 (자체검사기록표)』를 제출 또는 기록한다.

2. 부품교체

- 1) 기기의 마모 및 열화를 예측하여 계약승강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기 구성 부품의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행한다.
- 2) 수리 또는 부품교체의 범위는 본 시방서 제 7 항 『점검의 대상 개소』의 관련부품으로 한다.
- 3)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 후 자재 반납 및 폐자재는 “을”이 처리한다.
- 4) 예외 부분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 4 조에 의한다.

3. 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다.

4. 고장대응

고장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24시간 HCCC(HYUNDAI CUSTOMER CARE CENTER)를 운용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인력이 대기한다.

5. 법령에 의한 검사입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정기검사 시 입회한다.

6. 작업 중의 운행정지

점검, 부품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일시로 운행을 정지 할 수 있다.

7. 점검의 대상 개소

가. 엘리베이터 (Elevator)

- 1) MAIN CONTROLLER 내부 각 RELAY, PCB 각 기기
- 2) TRACTION MACHINE 및 SHEAVE
- 3) MAGNETIC BRAKE
- 4) HOIST MOTOR 및 MOTOR GENERATOR
- 5) GOVERNOR SET
- 6) CAGE 내부 각 SWITCH 및 조명기구
- 7) 인터폰 및 비상등
- 8) DOOR MACHINE 및 각종 DOOR SET
- 9) LANDING CONTROL SWITCH
- 10) 각종 안전 SWITCH 및 안전장치
- 11) CAR 및 COUNTERWEIGHT GUIDE ROLLER(SHOE)
- 12) MAIN ROPE 및 GOVERNOR ROPE
- 13) MAIN RAIL 및 COUNTERWEIGHT RAIL
- 14) 각종 INDICATOR 및 BUTTON SWITCH
- 15) 승강로 및 PIT 내부 각 장치
- 16) 유압 POWER UNIT (MOTOR, PUMP, 압력계, 밸브류, 오일탱크)
- 17) 유압 각부 압력 배관, 고압 고무 호수
- 18)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 19) 유압 CYLINDER 각부 상태
- 20) 유압 각부 누유 및 OIL 온도

나.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 1) MAIN CONTROLLER 내부 각 RELAY, PCB, 각 기기
- 2) DRIVING MOTOR
- 3) MAGNETIC BRAKE
- 4) 감속기어 (REDUCER)
- 5) 구동 CHAIN 안전장치 및 비상 BRAKE
- 6) STEP 및 HANDRAIL 구동장치
- 7) COMB 및 DEMARCATION COMB 상태
- 8) HANDRAIL 및 HANDRAIL GUARD
- 9) 비상정지 SWITCH 및 기동 SWITCH
- 10) STEP 표면상태, 정렬, 틈새, 운행상태
- 11) STEP CHAIN, STEP CHAIN ROLLER TRACK
- 12) STEP CHAIN 안전 SWITCH
- 13) 기타 안전 SWITCH, 주의 표지, 삼각부 GUARD
- 14) 조명장치 (HANDRAIL, STEP, COMB)
- 15) 방화 셔터등과의 연동장치
- 16) 의장 및 기계요소 조임 상태

[별첨 3]

원격제어서비스 시방서

1. 원격점검

- 1) 월 1회 원격으로 승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갑”에게 제공한다.
- 2) 승강기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24시간 원격으로 관리하며 이상 징후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3) “갑”이 요청할 경우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강기 운행층 변경, 도어 닫힘 대기 시간 조정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2. 부품교체시기 알림 서비스

- 1) 기기의 마모 및 열화를 예측하여 원격제어 승강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기 구성 부품의 수리, 또는 부품 교체시기를 알려준다. (단, 종합유지관리 계약일 경우)
- 2) 수리 또는 부품교체의 범위는 본 시방서 제 5 항 『점검의 대상 개소』의 관련부품으로 한다.
- 3)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 후 자재 반납 및 폐자재는 “을”이 처리한다.

3. 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다.

4. 원격고장처리

고장 발생 시에는 원격으로 HCCC(HYUNDAI CUSTOMER CARE CENTER)에 자동접수 되어 고장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시스템 제어로 재가동 시도하며, 재가동 시킬 수 없는 경우 담당 기사를 출동시켜 고장처리를 하도록 한다.

5. 원격제어를 이용한 점검의 대상 개소

- 1) 제어반 내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단말기)
- 2) 연결 케이블, 전원공급장치
- 3) 통신선로, 통신연결상태
- 4) 방재실에 설치되어 있는 PC(방재실에 원격감시반이 별도 설치된 경우에 한함)

고객정보등록카드

■ 계약정보 (*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계약 담당자	영업사원	광릉중	연락처
	주점검사자		연락처
		i/o	- 8003 - 6597
			- 1577 - 0603
*계약 상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FM <input type="checkbox"/> FM-Light <input type="checkbox"/> FRTS(FM+HRTS) <input type="checkbox"/> FM-Premium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원격제어(HRTS) (방문점검 : ○2개월 1회 / ○3개월 1회 /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상통화장치(DI-PBX)		
*고객명 (현장명)	필리핀 대사관	*고객번호 (Proj. No)	0/3335
수납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input type="checkbox"/> 가상계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로 <small> 자동이체 신청양식 계약서 뒷면 첨부</small>		
*대금청구지 주소 (지로 수신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하나우로 80		
*수취인	희재 담당과	*전화번호	Tel) 02 796 7387-9 Fax) 02 796 0827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E-mail (E-mail 청구서 포함)	① ② <small> E-mail 주소 /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당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mall>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input type="checkbox"/> 매일 5일 / <input type="checkbox"/> 매일 15일 / <input type="checkbox"/> 매일 25일 / <input type="checkbox"/> 매일 말일 / <input type="checkbox"/> 기타(일) <small>* 미 선택 시 매일 25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small>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SMS 수신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H.P.) - -	
<small>* 현대엘리베이터전자세금계산서(http://digital.hdel.co.kr) → 회원 로그인 시 ID/PW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가능 비회원 로그인 시는 발송된 E-mail의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 2011년 1월 1일 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small>			
<small>* 수납방법 안내 ① 자동이체(CMS) : 매월 발생하는 청구금액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고객님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드리는 편리한 요금 수납 서비스입니다. ② 가상계좌 : 고객님의계만 부여된 고유계좌로 365일 24시간 수시로 전국 은행 /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③ 지로(GIRO) : 매월 고객님의 지로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리면, 직접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지로 분실 시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small>			

